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공지능 심화·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검찰청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안 제1조 등).

나.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함(안 제2조).

다.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안 제3조).

라.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안 제4조).

마.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재외동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안 제5조 등).

바.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안 제9조 등).

사.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1명(9급 1명)은 국토부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안 제10조).

아.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안 제17

조).

자.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안 제18조).

차.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함(안 제22조).

카. 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안 제26조).

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안 제3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재정경제부 직제」의 개정) 재정경제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777”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769”를 “77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32”를 “733”으로 한다.

제2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73”을 “974”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33”을 “734”로 하며, 8등급 이하 “675”를 “676”으로 한다.

제3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781”을 “784”로 하고, 일반직 계 “744”를 “7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5”를 “738”로 한다.

제4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708”을 “1,714”로 하고, 일반직 계 “1,678”을 “1,6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607”을 “1,613”으로 한다.

제5조(「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45”를 “347”로 하고, 일반직 계 “341”을 “3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7”을 “329”로 한다.

제6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71”을 “672”로 하고, 일반직 계 “667”을 “66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6”을 “647”로 한다.

제7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901”을 “902”로 하고, 일반직 계 “891”을 “8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58”을 “859”로 한다.

제8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59”를 “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52”를 “6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3”을 “624”로 한다.

제9조(「성평등가족부 직제」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98”을 “299”로 하고, 일반직 계 “294”를 “2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3”을 “284”로 한다.

제10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034”를 “1,038”로 하고, 일반직 계 “1,024”를 “1,0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95”를 “99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554”를 “2,5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554”를 “2,5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45”를 “2,544”로 한다.

제11조(「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14”를 “615”로 하고, 일반직 계 “610”을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3”을 “594”로 한다.

제12조(「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60”을 “462”로 하고, 일반직 계 “454”를 “4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35”를 “437”로 한다.

제13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18”을 “4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17”을 “4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91”을 “393”으로 한다.

제14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7”을 “248”로 하고, 일반직 계 “246”을 “2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1”을 “232”로 한다.

제15조(「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88”을 “689”로 하고, 일반직 계 “687”을 “6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8”을 “669”로 한다.

제16조(「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707”을 “708”로 하고, 일반직 계 “706”을 “70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94”를 “695”로 한다.

제17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907”을 “915”로 하고, 일반직 계 “903”를 “9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90”을 “89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0,209”를 “20,2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209”를 “20,2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185”를 “20,182”로 한다.

제18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72”를 “375”로 하고, 일반직 계 “371”을 “3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1”을 “364”로 한다.

제19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562”를 “564”로 하고, 일반직 계 “561”을 “563”으로 하

며, 3급 또는 4급 이하 “551”을 “553”으로 한다.

제20조(「재외동포청 직제」의 개정)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0”을 “192”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3”으로 하며, 4급 또는 8등급 이하 “137”을 “139”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41”을 “542”로 하고, 일반직 계 “541”을 “542”로 하며,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9”를 “20”으로 한다.

제22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2,046”을 “2,04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375”를 “1,37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355”를 “1,3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7”을 “668”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40”을 “641”로 한다.

제23조(「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7”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을 “38”로 한다.

제24조(「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53”을 “354”로 하고, 일반직 계 “352”를 “3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9”를 “340”으로 한다.

제25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45”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3”을 “334”로 한다.

제26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477”을 “482”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6”을 “47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912”를 “9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12”를 “9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02”를 “900”으로 한다.

제27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435”를 “437”로 하고, 일반직 계 “434”를 “4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21”를 “423”으로 한다.

제28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40”을 “142”로 하고, 일반직 계 “139”를 “1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5”를 “137”로 한다.

제29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37”을 “138”로 하고, 일반직 계 “136”를 “1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2”를 “133”으로 한다.

제30조(「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519”를 “5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1”을 “1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0”을 “101”로 한다.

제31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6”을 “287”로 하고, 일반직 계 “280”을 “2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0”을 “271”로 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05”를 “507”로 하고, 일반직 계 “497”을 “4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70”을 “472”로 한다.

제33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73”을 “275”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46”을 “248”로 한다.

제34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2”를 “197”로 하고, 일반직 계 “189”를 “19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1”을 “186”으로 한다.

제35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29”를 “131”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2”를 “124”로 한다.

제36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21”을 “222”로 하고, 일반직 계 “216”을 “2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9”를 “2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00000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제20조)에 따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별표 1의2]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56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외무공무원 계	4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
9등급 또는 3급·4급	2
8등급 또는 4급 이하	44
일반직 계	10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2
4급 또는 8등급 이하	104
전문경력관	1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재정경제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77</u>	<u>778</u>	+1
•	•	•	
•	•	•	
일반직 계	<u>769</u>	<u>770</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32</u>	<u>733</u>	+1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1</u>	<u>784</u>	+3
·	·	·	
·	·	·	
일반직 계	<u>744</u>	<u>747</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35</u>	<u>738</u>	+3
·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08</u>	<u>1,714</u>	+6
•	•	•	
•	•	•	
일반직 계	<u>1,678</u>	<u>1,684</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07</u>	<u>1,613</u>	+6
•	•	•	
•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5</u>	<u>347</u>	+2
·	·	·	
·	·	·	
일반직 계	<u>341</u>	<u>343</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7</u>	<u>329</u>	+2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01</u>	<u>902</u>	+1
·	·	·	
·	·	·	
일반직 계	<u>891</u>	<u>892</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58</u>	<u>859</u>	+1
·	·	·	
·	·	·	

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8</u>	<u>299</u>	+1
•	•	•	
•	•	•	
일반직 계	<u>294</u>	<u>29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83</u>	<u>284</u>	+1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34</u>		<u>1,038</u>	+4	
		•	•		•		
		•	•		•		
일	반	직	<u>1,024</u>		<u>1,028</u>	+4	
		•	•		•		
		•	•		•		
3	급	또는	<u>995</u>		<u>999</u>	+4	
		4급 이하	•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54</u>	<u>2,553</u>	-1
일반직 계	<u>2,554</u>	<u>2,553</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45</u>	<u>2,544</u>	-1
·	·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47</u>	<u>248</u>	+1
•	•	•	
•	•	•	
일반직 계	<u>246</u>	<u>24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31</u>	<u>232</u>	+1
•	•	•	

[별표 3]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0,209</u>	<u>20,206</u>	-3
일반직 계	<u>20,209</u>	<u>20,206</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185</u>	<u>20,182</u>	-3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0</u>	<u>192</u>	+2
•	•	•	
•	•	•	
일반직 계	<u>141</u>	<u>143</u>	+2
•	•	•	
4급 또는 8등급 이하	<u>137</u>	<u>139</u>	+2
•	•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41</u>	<u>542</u>	+1
일반직 계	<u>541</u>	<u>542</u>	+1
.	.	.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9</u>	<u>20</u>	+1
.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46</u>	<u>2,048</u>	+2
경찰공무원 계	<u>1,375</u>	<u>1,376</u>	+1
.	.	.	
.	.	.	
총경 이하	<u>1,355</u>	<u>1,356</u>	+1
일반직 계	<u>667</u>	<u>668</u>	+1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640</u>	<u>641</u>	+1
.	.	.	
.	.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53</u>	<u>354</u>	+1
·	·	·	
·	·	·	
일반직 계	<u>352</u>	<u>353</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9</u>	<u>340</u>	+1
·	·	·	

[별표 5]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12</u>	<u>910</u>	-2
일반직 계	<u>912</u>	<u>91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02</u>	<u>900</u>	-2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0</u>	<u>142</u>	+2
•	•	•	
•	•	•	
일반직 계	<u>139</u>	<u>141</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5</u>	<u>137</u>	+2

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7</u>	<u>138</u>	+1
•	•	•	
•	•	•	
일반직 계	<u>136</u>	<u>13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2</u>	<u>133</u>	+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05</u>	<u>507</u>	+2
•	•	•	
•	•	•	
일반직 계	<u>497</u>	<u>499</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70</u>	<u>472</u>	+2
•	•	•	
•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3</u>		<u>275</u>	+2	
		•	•		•		
		•	•		•		
일	반	직 계	<u>271</u>		<u>273</u>	+2	
		•	•		•		
		•	•		•		
3	급	또는 4급 이하	<u>246</u>		<u>248</u>	+2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9</u>	<u>131</u>	+2
•	•	•	
•	•	•	
일반직 계	<u>128</u>	<u>130</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2</u>	<u>124</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